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180900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병
원 출입제한

진 정 인 경기도장애인인권옹호기관

피 해 자 ○ ○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병원 출입을 허용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지적장애 2급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심하다. 피해자가 20년간 이용해 온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마스크 미착용 시 병원 출입과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자가 복용 중인 뇌전증 약물은 대리처방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2021. 12. 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응급진료를 거부당하는 등 수차례 전문의 대면 진료를 받지 못해 치료받을 권리 및 건강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련 기관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제4-1 관 지침과 2021. 7. 8.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택시의 경우라 하더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하여야 한다.

상기 안내서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한 부분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피해자의 주치의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착용 상태 유지가 잘되지 않는 것일 뿐 이는 「장애인복지법」 상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으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응급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확진된 사람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데,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별도의 지침 등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외래공간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확진자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공간을 폐쇄해야 하는 등 피해자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해당 사례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에 따라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위한 해당 병원의 방침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안내서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서면진술, 관계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장애정도

발달장애인전문기관의 피해자 관찰 및 면담결과,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발달장애인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며 의사소통이나 인지 또는 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마스크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으로 마스크를 무는 행동과 마스크 착용을 시도하는 사람의 손등을 물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피진정병원 규모

피진정병원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600명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피진정병원은 사건 발생 당시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중앙 방역대책본부로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 전 호흡기 증상,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호흡기 외래 진료실은 비 호흡기환자와 혼재되지 않도록 유도인구가 드문 공간에 별도 설치하여 폐렴 등 중증호흡기환자를 격리해 진료하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다. 의료기관 출입제한 과정

피해자의 보호자는 2021. 12. 피해자와 함께 피진정병원의 응급실에 진

료를 받으러 갔다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진료를 거부당하였고, 2022. 1. 재활 의학과에 내원하고자 했으나 마스크 미착용자는 병원 내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 진정단체는 피진정병원에 피해자의 병원 출입제한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청하였고, 피진정병원은 2022. 1. 27.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을 허용한 부분이라고 해석하긴 곤란하다'며 '객관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환자는 진료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5. 판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코로나19 환자의 원내 유입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가 클 수 있기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방역과 예방활동은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마스크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질병관리기관의 감염관리 및 마스크 착용 안내지침에서도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마스크가 감염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는 하나,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흡 중단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도 일률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민안심병원의 경우 비호흡기질환자와 호흡기질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진료공간을 분리하고 강화된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진료를 한다. 또한 일부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아동의 진료를 위해 별도의 진료 공간을 마련하여 의료진이 강화된 의료보장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의료기관은 생명과 건강상태가 위태로운 환자에게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에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의료진이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보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체 방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한 것은 아니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의 출입이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피진정병원은 사건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된 병원으로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지를 직접 평가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

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은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건강 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피진정병원의 출입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과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이거나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예외로 두기 어렵고, 상기 안내서의 내용만으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에 대한 시설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사건 진정은 의료기관의 방침에 기인한 것이며, 위 안내서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처리 지침 등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 또는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3.

위원장 남 규 선

위원 한 석 훈

위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

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